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 의안번호 : 제1047호
- 발의자 : 황규복 의원(찬성자 14명)
- 발의일자 : 2019년 10월 14일
-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2. 제안이유

- 가.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채널 다변화 및 사용자 증가로 시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이 점점 다양화되고 있음.
- 나. 이에 시의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시민, 시민 소통, 시민 참여, 시정 정보, 소통 매체, 소셜 미디어 등의 정의(안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시민의 권리와 책무(안 제2조, 안 제3조)
- 다. 시민소통 활성화 사업내용, 운영과 지원(안 제6조 ~ 안 제8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직선거법」 등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가. 조례안 개요

- 동 제정조례안은 소셜 미디어의 다변화로 시민과의 소통 또한 다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을 통해 시정공감 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조례의 필요성 검토

- 동 조례안은 서울시 시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참여 행사, 이벤트 및 캠페인 등을 진행함에 있어 시민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현재 각 실국 및 산하기관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사업을 홍보하거나 모니터링하고 소정의 보상을 함에 있어 개별 조례나 자체 방침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거 없이 시행하는 경우도 있음.

〈시민이 참여하여 활동비, 마일리지, 기념품 등을 받는 사업 현황〉

실국명	사업명	지급방법	지급방법	법령근거
상수도사업본부	청소년 홍보단	기념품, 상품권	사전·사후	-
여성정책과	인터넷 시민 감시단 운영	상품권	사전	-
행정국	도로명주소 온라인 퀴즈	상품권	사전·사후	-
푸른도시국	공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활동수당	사전	자체방침
공공개발기획단	효창독립 100년포럼 시민참여단	수당	-	자체방침
복지정책실	서울시 복지정 제안 공모전	자문비	사전	자체방침
문화본부	2019 개관 박물관 통합 홍보	기프티콘	사전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기획조정실	시민평가단	활동비, 자원봉사시간	사전·사후	서울특별시 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정책과	원산지 명예감시원 활동	활동비	사전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민감사 옴부즈만위원회	시민참여옴부즈	활동비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시장은 홈페이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 이용자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고 참가자에게 상품권과 마일리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점차 다양해지는 소셜미디어들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참여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1) 조례안의 구조

- 동 제정안은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사업내용 및 운영, 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등 총 9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조문체계 현황>

조	조제목	조	조제목
제1조	목적	제6조	사업내용 및 운영
제2조	정의	제7조	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제3조	적용범위	제8조	표창 등
제4조	시장의 책무	제9조	시행규칙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책무	부칙	

(2)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

- 안 제1조는 시민 소통 활성화 사업 및 그 운영 지원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한 시정 공감대 형성, 참여 시정 구현으로 시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음.
- 안 제2조에서는 ‘시민’ 등의 용어에 대해 그 의미를 규정하고 있는 바, 일반적인 의미와는 달리 쓰일 수 있는 용어를 명확히 설명하여 조례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권리와 책무에 관한 규정(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 안 제4조에서는 시장에게 시민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의 제공,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 입안 시 시민의 의견을 고려할 책무를 지우고 있음.
- 안 제5조에서는 시민이 시 주요 정책의 수립·집행·평가·환류 등 전 과정에 참여하여 정보 획득 및 의견을 표명할 권리와 시민이 동 조례 안과 시의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할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4) 사업내용 및 운영과 운영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 안 제6조에서는 시민과의 소통활성화를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는 한편,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에서는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를 위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시민 참여 행사를 열거하고, 이를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활동비, 마일리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며, 기념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소통 매체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참여 시민에 대해 소정의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7조제2항에서 시민에게 활동비, 마일리지,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

호나목¹⁾에 부합하는지 집행부에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시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서울시장’이 아닌 ‘서울시’ 명의로 제공하여야 하고, 「공직선거법」의 같은 조항 가목과 나목에 따른 금품제공행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면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제외됨을 유의해야 할 것임.

- 또한 시민소통기획관의 시민참여 사업 중 ‘시민기자단’, ‘서울미디어메이트’, ‘서울영상크리에이터’, ‘I·SEOUL·U 프렌즈’ 등은 시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각종 정책과 정보들을 시민들의 시선에서 직접 블로그와 영상 등을 제작하여 알려주고자 하나 “환류절차”없이 매년 지속적으로 콘텐츠 수만 늘어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서울시는 동 제정조례안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등이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는 오해가 없도록 면밀한 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1) 「공직선거법」 제112조9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